

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(제8조제2항 관련)

기술능력	시설 및 장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지질 및 지반기술사,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</li> <li>○시추기사,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이상</li> <li>○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사무실</li> <li>○지구물리 탐사장비(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)</li> <li>○시험공 굴착장비(시험공 굴착장비의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)</li> <li>○수소이온농도(pH)·수온·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</li> <li>○수위 및 수량측정장비</li> </ul>

비고

1. 수질관리기술사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, 수질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수질 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.
2. 수질환경기사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.